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도시건설위원회(건설교통국)

의안번호	215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3. 11. 7.)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이선하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 (현행)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¹⁾, 「지방재정법」 제9조²⁾

- 1)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라. 기 타 : 입법예고 대상 (2023.9.27.~ 10.17)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 제1조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차장법 제21조의2</u>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u>제21조의2</u> ----- ----- -----.

- 2)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